

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 · 변경보고서

1. 상호 및 본점의 명칭·소재지

사원명 (상호 · 본점의 명칭)	본점소재지	사업자등록 번호	주소, 대표자, 연락처	출자의 목적	출자가액

기재상의 주의

1. 출자의 목적은 현금 · 수표 또는 증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
■ 첨부서류

- 1-1. 정관(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 1부
- 1-2. 법인등기부등본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) 1부
- 1-3. 발기인총회,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2. 대표자 및 임원

임원수 : 명(상근: 명, 비상근: 명)

직위	성명	주민등록번호	소유주식수 (비율)	주요 경력	등기·상근 여부	담당 업무	운용인력 여부	임원자격 적합여부	비고

기재상의 주의

1. 임원자격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.
2. 등기 임원 및 집행 임원 모두 기재한다.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, 유한회사의 이사,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을 포함한다.
3. 등기 · 상근여부에는 등기 여부 및 상근 여부를 기재한다.
4. 다른 지위(타회사 포함)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.

■ 첨부서류

- 2-1.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(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) 각 1부
 - 2-2.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
- ※ 금융회사인 경우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만 제출한다.

3. 목적사업,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사항에 관한 사항

4. 대주주 내역에 관한 사항

성명(상호)	대표자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소유주식수	지분율(%)	회사와의 관계

기재상의 주의

1. 회사와의 관계는 최대주주, 주요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여부를 기재한다.

■ 첨부서류

- 4-1. 대주주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(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·법인
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)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증빙서류 각 1부

5. 재무에 관한 사항

가. 자본금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일 자	원 인	증가(감소)한 자본금의 내용				증(감)자 후 자본금	신주의 배 정 방 법	증 자 비 율
		종류	수량 (주)	주 당 액면가액(원)	주 당 발행가액(원)			

기재상의 주의

1. 원인에는 유상증자, 무상증자,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, 합병, 주식배당 및
감자 등 자본금 변동원인을 기재한다.
2. 종류에는 보통주, 우선주, 전환주 등 지분증권의 종류를 기재한다.

나. 요약재무정보(최근 사업연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연도	제×1기

■ 첨부서류

- 5-1.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,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
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) 1부

※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-1의 서류를
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6. 투자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	소속	직위	담당업무	연락처	주요경력	비고

기재상의 주의

1. 다른 지위(타회사 포함)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교란에 기재한다.

■ 첨부서류

- 6-1. 운용인력의 경력증명서(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) 1부

7. 보수에 관한 사항

기재상의 주의

1. 정관에 규정된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.

8.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- 8-1.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·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
- 8-2.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
- 8-3.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

9. 그 밖의 기재사항

■ 첨부서류

- 9-1.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9-2.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
- 9-3.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(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업무집행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 사본 1부
- 9-4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
- 9-5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※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15에 따라
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